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5 선고 2022가단52409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

피 고 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 C, (친권자모) D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892,364원 및 그 중 28,694,859원에 대하여는 2022. 7. 29.부터 2022. 9. 29.까지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8.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8. 17. 접수 제354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5. 7. 피고 A 사이에 피고 A이 E은행 모란지부(이하 'E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3,000만 원(약정지연손해금율 2018. 2. 1.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 이후부터는 연 8%)의 한도내에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 A은 2021. 5. 7. 위 보증서에 기하여 E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는데 2022. 6. 25.경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22. 7. 29. 피고 A을 대위하여 E은행에 원리금 29,513,229원을 변제하여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A으로부터 818,370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잔존대위변제금 28,694,859원(= 29,513,229원 - 818,370원), 신용보증약정상 확정손해금 179원과 가지급금 197,326원 합계 28,892,364원(= 28,694,859원 + 179원 + 197,326원)에 관한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약정 이후인 2021. 8.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17.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당시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원구청세무과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합계액 28,892,3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 A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B은 어머니인 D가 피고 A에게 2020. 6. 9.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해의사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고 A의 무자력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 피고 A은 이미 원고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이미 피고 A의 자력이 좋지 않음에 따라 마쳐진 대물변제명목의 이전등기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기에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여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되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 밖에 피고 B의 무자력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다473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A이 사실상 무자력의 상태에서 피고 B과 사이에서 유일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선의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합계액 28,892,364원 및 그 중 잔존원리금 28,694,859원에 대하여는 구상채권 발생일인 2022.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9. 2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창우

별지